

의안번호	2204523
의 퇴 인	김위상의원
회 답 일	2024.10.28
추계번호	24B369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천편입토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보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6억 3,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31억 7,300만원(연평균 86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안 제3조)	8,635	8,635	8,635	8,635	8,635	43,173	8,635
국비	4,790	4,790	4,790	4,790	4,790	23,951	4,790
지방비	3,844	3,844	3,844	3,844	3,844	19,222	3,844

주: 1. 국가하천은 국비, 지방하천은 지방비 분담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추계)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미보상토지로 남아있는 잔여분에 대한 보상비용을 추산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하천의 보상청구권 만료기간을 2033년까지 연장하고 있어,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하천편입토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계획을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¹⁾ 본 추계에서는 최근(2009~2013년)에 실시한 하천편입 보상청구 실적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기간 동안에 미보상토지의 36%에 대한 보상신청이 발생한다고 가정함
 -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보상청구가 이뤄진 2020~2023년에 실시한 하천편입 보상청구 실적(2,627천㎡)²⁾ 현황 자료를 참고할 경우 전체 미보상토지(7,301천㎡)의 36%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바 있음
 - 추계기간 동안 미보상토지(4,674천㎡) 중 36%의 보상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1) 그간 3차에 거쳐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신청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청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이므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보상토지 전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2)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천편입 보상청구 실적은 2,627천㎡이고, 이는 미보상토지(7,301천㎡)의 36%에 해당한다.

- 동법 제4조3)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함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하천편입토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보상 대상 토지에 보상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
- (추계대상) 환경부가 제출한 하천편입 토지보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편입토지 15,334만㎡ 중에서 14,867만㎡(하천편입토지의 97.0%)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미보상토지는 467만㎡인 것으로 추정

[표 2]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현황

(단위: 천㎡)

구분	하천편입토지 (A)	보상청구 현황					미보상토지 (C=A-B)
		소계 (B)	1차 (1985~ 1990)	2차 (2000~ 2003)	3차 (2009~ 2013)	4차 (2020~ 2023)	
국가하천	128,556	126,460	96,600	17,049	10,469	2,342	2,096
지방하천	24,785	22,207	16,300	3,012	2,610	285	2,578
합계	153,341	148,667	112,900	20,061	13,079	2,627	4,674

주 1. 2019년 발의안(의안번호 2018276호)에 대한 비용추계서 자료를 바탕으로 4차 보상 청구 현황을 보상 주체인 시·도에서 제출받아 반영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4~'25년 국가하천승격(지방→국가하천)에 따른 청구 및 미보상 토지 변동사항은 미반영
자료: 환경부

- 본 추계에서는 이들 미보상토지 중 최근 시행된 실적치의 보상신청율을 참고하여, 미보상토지의 36%인 168만㎡를 대상으로 추계기간 동안 균분하

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한다.

여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함

[표 3] 보상 대상 토지 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천㎡)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하천	150.8	150.8	150.8	150.8	150.8	754
지방하천	185.6	185.6	185.6	185.6	185.6	928
합계	336.4	336.4	336.4	336.4	336.4	1,682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보상금 단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은 현행법 제6조⁴⁾에 따른 보상액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현시점에서 알 수 없음

- 다만, 추계에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현황(2020~2024년 9월) 자료를 참고하여, 보상단가는 국가하천 31,765원/㎡, 지방하천 20,713원/㎡를 각각 적용하되, 추계기간 동안에 보상단가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하천편입토지 평균 보상단가: 2020~2024년 9월

구분	청구면적 (천㎡)	보상면적 (A, 천㎡)	보상금액 (B, 백만원)	평균 보상단가 (B/A, 원)
국가하천	2,342	597	18,964	31,765
지방하천	285	115	2,382	20,713

자료: 환경부

□ 개정안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에 따라 국가 및 시·도지사가 하천편입토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보상할 경

4)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6억 3,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431억 7,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상 대상 토지 (A, 천㎡)	국가하천	150.8	150.8	150.8	150.8	150.8	754
	지방하천	185.6	185.6	185.6	185.6	185.6	928
보상금 단가 (B, 원)	국가하천	31,765	31,765	31,765	31,765	31,765	—
	지방하천	20,713	20,713	20,713	20,713	20,713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국가하천	4,790	4,790	4,790	4,790	4,790	23,951
	지방하천	3,844	3,844	3,844	3,844	3,844	19,222
	합계	8,635	8,635	8,635	8,635	8,635	43,173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최근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실적치 수준의 보상신청, 보상단가를 바탕으로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결과로, 실제 보상신청이 이뤄질 경우 신청물량과 단가 수준은 실적치와 달리 나타날 수 있어 추계액은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